

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전공 내규

시행일 : 2020.03.01.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목적) 본 내규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과정) 아동가족학과 대학원은 학·석사 연계과정, 석사학위과정, 석사예약 입학과정(이하 “예약입학자”)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을 둔다.

제 2장 학사운영위원회

제 3조(구성)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아동가족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학과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조(기능) 위원회는 입학전형, 학사업무, 학생지도, 예산심의 및 의결, 기타 학과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제 3장 석·박사 통합과정

제 5조(정의) 석·박사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)은 석사 및 박사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.

제 6조(학사관리) 통합과정의 교과과정 이수,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박사학위 과정에 준한다. 다만,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.

제 7조(졸업학점) 통합과정의 졸업학점은 60학점으로 하며, 통합과정 재학 중인 자가 박사과정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,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제 4장 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

제 8조(학위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) ①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위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1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.

- ②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위지도교수를 선정하며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2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, 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5장 이수과목 및 선수과목

제 9조(이수과목) ① 이수과목은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아동가족학과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한다. 단 학생의 전공 및 학위논문의 주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타 학과 개설과목은 학위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.

제 10조(선수과목) ① 아동가족학과의 아닌 타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석사과정 입학자는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학부 교육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수강과목은 학위지도교수가 지정한다.

② 아동가족학과의 아닌 타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박사과정 입학자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수강과목은 학위지도교수가 지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아동가족학 관련 과목의 학점은 소정의 학점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 6장 학위자격시험

제 11조(전공시험) ① 석사과정 중인 자는 18학점, 박사과정 중인 자는 27학점, 통합과정 중인 자는 4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전공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.

② 전공시험 과목은 응시자의 전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되, 석사과정은 3과목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
제 12조(공개발표)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발표하여 공개발표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공개발표를 신청하는 경우,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학위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공개발표는 졸업학기에 시행하며 자격은 석사의 경우 24학점, 박사의 경우 36학점, 통합과정의 경우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④ 공개발표는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할 수 있다.

⑤ 공개발표 합격은 공개발표를 합격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.

제 7장 학위청구논문 심사

제 1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)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
2.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-(2.7) 이상인 자
3. 학위자격시험(전공시험, 공개발표)에 합격한 자

제 14조(학위청구논문의 작성)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,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15조(학위청구논문의 심사)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 16조(논문심사위원회)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③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이 최소 2명 포함되어야 하며, 1명 이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④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가 최소 1명, 최대 2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, 그 외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또는 본교 동일전공분야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⑤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, 타 대학교,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⑥ 제 3항 및 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⑦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. 다만 대학원 내규 제71조를 준용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
제 17조(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18조(학위청구논문의 제출) ① 석사과정의 경우,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 1급 등재지 이상에 논문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여야 하며, 그 신청 또는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박사과정의 경우,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국내 1급 등재지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

여야 하며,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.

제 8장 장학금

제 19조(장학생 선정)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다.

③ 장학생 선정 및 지급은 학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 9장 연구윤리

제 20조(연구윤리) ① 연구 관련자(교원, 연구원, 대학원생, 학위지도교수,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)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학위 취소를 비롯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10장 보칙

제 21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① **(효력)** 본 내규는 상위법인 대학원 학칙 및 세칙에 우선 할 수 없다.

② **(시행일)**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(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)의 제5항과 제6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신·편입 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